

	교원 및 교원 외 강의시수 관련지침	문서번호	3-3-4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20. 02. 28.		
		페이지	1/1	관리 부서	교무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수업 및 강의시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강의의 구분) 본 대학의 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임교원의 이론강의, 실기강의 및 임상실습 등의 수업을 일반강의라 한다.
2. 전임교원의 일반강의 책임시간을 초과하는 수업을 초과강의라 한다.
3. 겸임교원, 강사, 초빙교원 등의 시간제로 담당하는 수업을 시간강의라 한다.

제3조(강의 책임시수) 교원의 강의 책임시수는 다음과 같이 시행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전임교원의 주당 일반강의 책임시수
 - ① 보직교수의 주당 일반강의 책임시수는 6시간으로 한다.
 - ②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주당 일반강의 책임시수는 9시간으로 한다.
 - ③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주당 일반강의 책임시수는 15시간 이하로 한다.
2. 비전임교원의 주당 일반강의 책임시수
 - ① 겸임, 초빙교원의 주당 일반강의 책임시수는 「비전임교원 임용규정」 제11조와 제18조를 준용한다.
3. 강사의 주당 일반강의 책임시수
 - ① 강사의 주당 일반강의 책임시수는 「강사임용규정」 제26조를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교명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